

	회 장
상근부회장	고치환
이경훈	

2017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7. 2. 2.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7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7. 2. 2(목) 11:00 ~ 12:3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15명 중 11명 참석(감사 1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1명) : 고치환, 송옥희, 이연봉, 부재옥, 김금자, 김순실, 김순효, 박영식, 박정해, 양광호, 이흥기

다. 감사(1명) : 고두승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후 고치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2017년 새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하다고 하다. 제7대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3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전에 회의자료가 배포되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면 별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박영식 이사 : 원안 동의하다.

이사를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감사보고

- 의 장 : 고두승 감사에게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요청하다.
- 고두승 감사 :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를 하다.
- 의 장 : 감사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양광호 이사 : 감사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감사규정을 제정 하게 되면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질 수 있어서 자칫 감사가 경직되어질 수 있다. 협의회의 경우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과는 다르게 사회통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다각도로 감사가 이뤄져야 하지않나 생각되어진다고 하다.
또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행정서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자료작성에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사례를 들어 달라고 하다.
- 고두승 감사 : 감사규정의 제정을 요구한 이유는 감사를 진행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모범적인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규정도 새롭게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라고 하다.
그리고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업무일지 서식 등 일부 서식을 직

원별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공통서식은 통일된 서식을 사용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다.

- 박영식 이사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것 같다며 감사보고에 대한 원안동의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사무처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이행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하고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원안 처리됨을 선언하다.

8. 업무보고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신규가입 회원 및 탈퇴회원 현황,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하다.

- 양광호 이사 : 회비미납으로 인한 회원제명의 경우 회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원규정에 2년이상 회비미납시 회원제명이 되며 그 미납회비는 결손처리 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등도 충분히 배정해 달

라고 요청하다.

- 의 장 :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의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다

9.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의안 아라중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중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중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제1회 자활근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중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좋은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8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임원(부회장, 이사) 인준안, 제9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9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안건 중 예산·결산과 관련한 심의 안건인 제1호~제7호와 제8호~제9호 의안을 구분하여 일괄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7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과 복지관 권미애 부장, 어린이집 이승희 원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권미애 부장 :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이승희 원장 : 제6호, 제7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의 장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사회복지협의회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비해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것 같다. 특히 난치병환아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집행이 전혀 안되었

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양광호 이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하다.
특히 난치병환아 지원사업비의 경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진행되어오던 사업으로 매년 후원결연사업비가 연 1백만원 정도가 모금되어진다. 이 1백만원을 갖고 몇 년간은 백혈병 소아암협회 등에 장학금 형태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 몇 년간 사업비를 적립시킨 후 목돈으로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앞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하다.
- 박영식 이사 : 아라어린이집 사업계획을 살펴보니 연간 사업이 매달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만 나열된것 같다고 하며 특별한 계절이나 특별한 달 예를들어 5월의 경우 어린이날 행사, 어버의날 행사 등과 같이 가족과 효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하다.
- 이승희 원장 : 아라어린이집의 경우 매주 숲 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표현하다보니 매달 반복적인 사업들만 나열한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박영식 이사님이 제안하신 프로그램 등도 당연히 진행되는 사업으로 그 사항들은 향후 사업결과 보고서 별도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현재 아라어린이집 아동의 경우 장애아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숲나들이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는데 별도 차량은 있는지, 어떻게 나들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묻다.
- 이승희 원장 : 아라어린이집에는 봉고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숲나들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여 부득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금 오래된 차량이지만 급하게 봉고차량 1대를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다양한 외부기관에 차량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아라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들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문제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며 아라어린이집에서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다.
- 송옥희 부회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졌다면 원안가결에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심의 안건인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제3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제1회 자활근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 의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좋은이웃들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6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7호 의안 아라어린이집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한다.

라. 부의안 상정

- 의 장 : 제8호, 제9호 의안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8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임원(부회장, 이사) 인준안과 제9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다.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8호 의안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개최된 2016년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 당시 현행 정관상 임원수가 15인으로 되어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총 30명의 임원 중 15명을 우선 인준받고 나머지 15명은 정관개정안을 인가받은 후

이사회에서 인준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로 15명의 임원을 선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그 명단은 부회장에 고승화, 임태봉 회원, 이사로 강정숙, 고관용, 고보선, 김도영, 김효철, 문성은, 석건, 양예홍, 양은정, 양창오, 윤흥기, 원석철, 이귀경 회원이라고 하며 동의여부를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8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7대 임원 인준안은 고승화, 임태봉회원을 부회장으로 강정숙, 고관용, 고보선, 김도영, 김효철, 문성은, 석건, 양예홍, 양은정, 양창오, 윤흥기, 원석철, 이귀경 회원을 이사로 인준함을 선언하다.

- 의 장 : 제9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은 제3대, 제4대, 제5대 회장으로 활동한 이동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년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을 제7대 임원 임기 중 명예회장으로 선임해 자문 등을 얻고자 한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고치환 회장님이 제7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한것 같다며 원안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9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선임안이 원안가 결됨을 선언하다.

9. 기타사항 토의

- 고경운 상근부회장 : 지난 2016년도 이사 상조회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하다.
- 의 장 : 고경운 상근부회장에게 2016년도 이사회 상조회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지시하다.
- 고경운 상근부회장 : 별지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도 이사회 상조회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하다.
- 고두승 감사 : 이사회 상조회 회칙에 회원자격 상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것 같다. 결산자료에 보면 회비미납 회원들이 있는데 회비미납 회원에게 경조사가 발생 했을때 회비미납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할것 같다며 회비가 2년이상 미납될 경우 자격을 제한 한다는 등의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회원자격에 대한 회칙개정도 중요하지만 더나아가 이사회 상조회 존치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다. 앞으로 신임 이사들이 15명 추가되면 상조회 회원수도 40명이 넘어서 협의회에서 관리하기에도 힘들것 같고 또한 현재 이사회 상조회에서 공동으로 경조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도 경조사에 대한 부조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별적으로 부조금을 전달하는데 굳이 별도의 상조회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순호 이사 : 회원자격에 대한 부분은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사회 상

조회 존치문제는 현시점에서 결정하기에 무리가 있다. 일단 상조회
원 30명에 대한 과반수 회원이 참석한것도 아니므로 여기서 결정하
는데 무리가 있고 갑작스럽게 상조회를 없애는것 보다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가면서 상조회 존치여부는 판단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다.

- 김금자 이사 : 김순호 이사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이사회 상조회는 2년이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
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하고 현재 이사회 상조회는 계속 유지하는 것
으로 하는것이 어떠한지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이사회 상조회는 2년이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
는 것으로 회칙을 개정하여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하다.

10. 폐 회

- 의 장 :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
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박영식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의 장 : 박영식 이사의 폐회동의에 대하여 의견을 묻다.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7년도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2:30)

2017년 2월 2일

회 장 : 고 치



부회장 : 송 옥



이 연



이 사 : 부 재



김 금



김 순



김 순



박 영



양 광



박 정



이 흥



확인자 : 고 경



기 록 : 김 성

